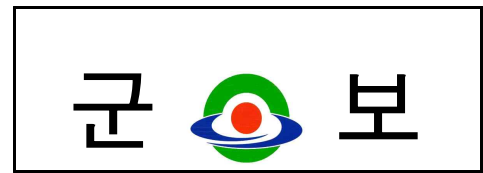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3호 2022. 12. 29.(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37호)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38호)
-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39호)

고 시

-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변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136호)
-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13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37호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예산의 범위 안”을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재향군인의 안보 의식 향상 교육사업
4. 군민의 안보 의식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38호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악취방지·저감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르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변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된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30퍼센트 까지 증설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를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악취방지·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해당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악취방지·저감시설 기준(제2조제5호 관련)

축 종	악취방지·저감시설
소·젓소·말· 양·염소	* 축사 내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설치 * 축사 주변 차폐수 식재
돼지	* 배출시설, 처리시설 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설치 * 축사 주변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
닭·오리· 메추라기	* 바닥 콘크리트 타설 * 배출시설, 처리시설 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설치 * 축사 주변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
개 및 그 밖의 가축	* 축사 형태에 맞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 축사 주변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

※ 비 고

1. 차폐막의 경우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재질로 만들 것
2. 차폐수와 차폐막을 혼용하여 설치가 가능
3. 연접한 축사의 경우 차폐수, 차폐막을 공동으로 설치 가능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거 리
주거 밀집지역	· 지역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5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1km이내 지역
주거지역	· 지역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도시지역	· 지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300m이내 지역
자연취락지구	·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500m이내 지역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
관광·온천지구	· 지구를 포함한 부지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5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 경계선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5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1km이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km 이내지역
하천구역	·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50m이내 지역
도로구역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지구를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지역
저수지 (저수량 1만톤 이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6호의 저수지(저수량 1만톤 이상)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의료·노유자·종교 시설	· 부지경계로부터 700m 이내 지역
지하수 보전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400m 이내 지역
운동시설	· 부지경계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500m 이내 지역
수질오염 총량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이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39호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예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2-70호로 고시된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변경)

계 획 명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시행자	예천군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본·남본리 일원					면 적	230,428㎡ (163,220㎡)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유 형	일반근린형		
사 업 비 (억원)	구분	합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	공기업	기금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방비		
	당초	257.01	72.00	48.00	58.19	29.41	27.65	11.76	10.0
	변경	277.20	72.00	48.00	58.19	29.41	47.84	11.76	10.0

활성화계획도(변경)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변경없음)

비전	단술(禮) 샘(泉)에 깃드는 새바람, 그리고 확실한 행복
목표	1.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소득지원 2. 기초생활 SOC확충을 통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육성 3. 범죄예방설계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

③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내용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A-1-1 남본시장 진입로 개설	① 남본시장 진입로 개설(HW) (사업비) 부지매입비 2.64억원, 공사비 0.2억원 → 부지매입비 0억원, 공사비 0.2억원 (사업내용) 진입로 개설 L=10m, B=6m(변경없음) (사업기간) 2022년3월(변경없음)	▶마중물사업의 부지매입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A-3-1 한우왕조 2000 조성	① 한우왕조 2000 조성(HW) (사업비) 부지매입비 11.99억원, 조성비 44.02억원 → 부지매입비 0억원, 조성비 56.01억원 (사업내용) 신축 연면적 5,505㎡, 지상4층(변경없음) (사업기간) 2024년11월(변경없음)	▶마중물사업의 부지매입비 감액 및 조성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
B-1-1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①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HW) (사업비) 부지매입비 5.56억원, 조성비 24.6억원 → 부지매입비 0억원, 조성비 37.55억원 (사업내용) 신축 연면적 1,100㎡, 지상3층 → 부지매입비 1,960㎡, 지상4층 (사업기간) 2022년12월 → 2023년5월 (증5개월)	▶마중물사업의 부지매입비 감액 및 조성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 ▶건축 설계완료(BF인증)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건축 설계완료(BF인증)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B-2-1 단샘어울림센터 조성	① 단샘어울림센터 조성(리모델링)(HW) (사업비) 10억원→9.61(감 0.39억) (사업내용) 리모델링 연면적 825㎡, 지상2층(변경없음) (사업기간) 2021년12월 → 2021년12월(변경없음)	▶사업 준공 후 실제 집행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B-2-2 단샘카페 및 역사문화전시관	① 단샘카페 및 역사문화전시관(SW) (사업비) 2.5억원 → 0.94(감 1.56억) (사업내용) 단샘카페 운영, 역사문화전시관 전시 (변경없음) (사업기간) 2022년12월(변경없음)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
B-2-3 시니어아카데미 운영	① 시니어아카데미 및 다목적강당(조성)(HW) (사업비) 조성비 2.8억원, 운영비 0.2억원 → 조성비 0억원, 운영비 0.2억원 (사업내용)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창고동 리모델링 → 신축 3층 연면적 1,254㎡ (사업기간) 2022년12월 → 2023년6월 (증6개월)	▶부처연계사업으로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지자체 3. 매콤쌈싸름 남본시장 만들기 부지매입비	① 남본시장 진입로 개설(HW) (사업비) 부지매입비 0억원 → 2.64(증 2.64억원) (사업기간) 2022년3월	▶마중물사업의 부지매입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지자체 4. 한우왕조2000 조성 부지매입비	① 한우왕조2000 조성 부지매입비(HW) (사업비) 부지매입비 0억원 → 11.99(증 11.99억 원) (사업기간) 2024년11월	▶마중물사업의 부지매입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지자체 5.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①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부지매입비(HW) (사업비) 부지매입비 0억원 → 5.56(증 5.56억원) (사업기간) 2023년5월	▶마중물사업의 부지매입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4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자체	
	합계	277.20	130.19	77.41	11.76	10.00	47.84	
마중물 사업	소계	136.88	72.00	48.00		10.00	6.88	
	매콤쌈싸름 남본시장 만들기	1.70	1.02	0.68				
	전통시장 환경개선	8.35	5.01	3.34				
	한우왕조2000조성	58.53	29.12	19.41		10.00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44.83	22.77	15.18			6.88	
	단샘어울림센터조성	10.75	6.45	4.30				
	더 좋은 단샘마을 만들기	12.72	7.63	5.09				
부처 연계사업	소계	87.60	58.19	29.41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70.00	49.00	21.00				
	예천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3.90	2.34	1.56				
	주차환경개선사업	13.70	6.85	6.85				
공기업 투자사업	소계	23.53			11.76		11.77	
	예천읍 지중화사업	23.53			11.76		11.77	
지자체 사업	소계	29.19					29.19	
	청년회관 설치 운영	5.00					5.0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00					4.00	
	매콤쌈싸름 남본시장 만들기 부지매입비	2.64					2.64	
	한우왕조2000 조성 부지매입비	11.99					11.99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5.56					5.56	

5 예산 집행 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277.20	20.70	70.62	51.00	57.21	38.02	39.65
마중물 사업	소계	136.88			26.00	35.21	37.02	38.65
	국비	72.00			15.60	17.00	16.21	23.19
	지방비	48.00			10.40	11.33	10.81	15.46
	공기업							
	기금	10.00					10.00	
	자체	6.88				6.88		
부처 연계사업	소계	87.60	20.70	24.90	21.00	21.00		
	국비	58.10	10.80	17.30	15.00	15.00		
	지방비	29.50	9.90	7.60	6.00	6.00		
	공기업							
	기금							
	자체							
공기업 투자사업	소계	23.53		23.53				
	국비							
	지방비	11.77		11.77				
	공기업	11.76		11.76				
	기금							
	자체							
지자체 사업	소계	29.19		22.19	4	1	1	1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자체	29.19		22.19	4	1	1	1

6 관련서류 열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4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54-650-624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8.

예 천 군 수

1.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 · 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접도구역 해제 내용

도로의 종류	구)지방도 현)군도	노선번호	구)927호선 현)25호선	노선명	점촌~와룡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해제구간 : 접도구역 해제(L=8.2km) 위 치 : 호명면 본포리 383-1 ~ 호명면 본리 261-1				
접도구역 해제사유	지방도 924호선에서 군도 25호선으로 이관된 노선에 대하여 군도 이하 접도구역의 지정 의무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3. 지형도면 고시도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7)에서 공람 가능함.(관계도서 게재 생략)